질문, 토론, 시민성 찾기

허 진 만

수원 삼일상업고등학교

1. 좌절의 시대, 공교육에서의 시민성

Il faut vivre comme on pense, sans quoi l'on finira par penser comme on a vécu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살아온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 폴 부르제(Paul Bourget), Le Démon de midi, 1914[1)]

"인생 뭐 있어, ○○○야!" 하는 통닭 회사 광고 카피가 유행의 정점이었던 때가 있다. 호기롭게 소비하고 인생을 즐기라는 이 카피는 다수의 사고를 대변한다. 자기 뜻에 맞지 않거나 반하는 일이 생겨도 어쩌지 못하는 체념. 이것이 풀리지 않을 때 사람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같은 순응과 자기 합리화를 택한다.

인생이 이처럼 특별한 것이 없다면 뭘 그렇게 학생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성실하게 살라고 열정을 다해 가르칠까? 교사가 삶의 태도에 진지해야 하는 이유를 필자는 이런 카피에서 역설적으로 감지한다.

2013년 이후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난도)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혜민), <강신주의 다상담>(강신주)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넘어 밀리언 셀러가 되었다. 책으로써 서로를 위로해 주는 이런 현상은 좋은 것일까. 위로와 위안은 이제 필요 수위를 넘쳐 지겹다는 느낌까지 들게 한다. 이런 현상의 배경은 현실 사회가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는 뜻이고, 행정가들이 정상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정치는 갈수록 시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객체화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효능감이 바닥을 치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고교생 중 강남 3구 출신 학생이 70% 였다는 기사[2)]를 넘어 한 경제학 교수의 2014년 논문 '경제 성장과 교육의 공적 경쟁'[3)]에는 입시 경쟁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이미 사회를 권력의 쟁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다. 못된 사회학을

1) 프랑스의 격언 사이트인 http://www.linternaute.com에서 인용

2) '서울대 신입생 70%, 강남 3구 출신...구로·금천 한명도 없어'(연합뉴스, 2013년 11월 19일)

3) "한국 입시제도, 진짜 인재 가려내는데는 실패"(국민일보, 2014년 8월 14일)

빌어 표현하면,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능력 있는 부모를 못 만났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우리를 자학하게 만든다. 이대로 무너질 텐가? 아니면 학생들과 함께 세상을 살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과나무 한 그루씩을 심을 텐가.

정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응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공교육은 바로 이런 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긍정적이며 효능감이 느껴지는 사회화 교육이다. 전통적인 급진적 교육사회학 관점에서는 이런 역할이 사회의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하겠지만, 교육과정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교육과정을 재해석하는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로 사회 모순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은 다시 봐도 참 중요한 교사의 임무가 아닐까.

2. 질문을 보면 사회의 환부가 보인다

2013년에 시행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고 면접 문제를 살펴 보자.

* '한국을 10번째 방문한 외국인 친구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장소 한 곳을 선정하고, 그 곳을 선정한 배경과 소개할 내용은?',

* '한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아는 대로 말해보고, 이들 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우리사회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말하시오.'

* '(제시어: 디지털 매체, 문화, 미래, 제시사진: 남녀가 한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각자 휴대전화에 몰두) 사진을 보고 제시어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 '본인이 중학교 수학교사라 가정하고, 중1 학생들에게 수학교과서의 첫 단원이 왜 '집합'인지 설명하시오.'

언뜻 봐도 교사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이다. 공통점은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점이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여 타인을 설득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어려운 것은 그 사고의 과정이다. 그런 질문을 제시하거나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고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고등학교 면접을 치르는 학교가 소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대학이나 기업체의 입사 면접 문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휴대폰 중독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핵전쟁이 일어나 7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병커가 있다면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 성별, 연력, 직업 등을 고려하여 7명을 정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질문에는 사회의 문제의식이 흐른다. 기성인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기성인이나 전문가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철인 정치가 진작 구현되었을 것이다. 질문은 사회의 아픈 곳을 상징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알려준다. 헌데 그걸 우리는 외워 버린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말이다.

3.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은 인생을 살아갈 힘

교사가 ‘어쩔 수 없이’ 손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서울에 있는 영식이부터 부산에 있는 선아까지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일반화 교재이다. 교과서의 특성은 지식을 일반화하여 표현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는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전제하고 있지 않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흥미나 현실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학습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흥미 요소는 누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아니 그 전에, 그게 교과서가 취할 수 있는 특성인가?

21세기 스마트폰의 시대, 스마트교육을 추구한다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교육하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우리는 교육학에서 그걸 ‘가소성’이라는, 상당히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로 배웠다. 어렵게 말하지 말자.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특별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는 데 동의한다면, 그것을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은 인터넷도 아이패드도 아닌 교사만 가능하다. 사실 교사가 없이 학습이 무조건 가능하다면 학교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 대혼란이 오겠지.

2012년, 필자가 경제 교과서를 들고 3학년 수업을 구상할 때다. KDI 경제교육원에서 보내오는 경제교육 월간지 <클릭 경제교육>과 <경제> 교과서를 번갈아 보며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잠시 혼란이 왔다. <클릭 경제교육>은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행정부의 경제 교육 기관지이다. 당연히 교과서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관지이든 교과서이든 나로 하여금 ‘학생들이 이것을 배운다면 참 경제 관념이 양호한 사람으로 성장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 잠시 필자 스스로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인가?’ 하고 자문해 보았지만, 특별히 그럴 일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교과서와 경제 교육 기관지가 나의 흥미를 전혀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도 재미없는 걸 애들에게 가르친다는 생각에 이르자 1년 동안 그 고생을 할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아내에게 나의 이런 고충을 얘기했다. 아내는 몇 분 고민하더니, 평소의 생각을 바로 풀어냈다.

“당신이 근무하는 학교 애들 취업 많이 나간다며? 그럼 면접 질문처럼 학생들에게 실제 필요한 경제 관념이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질문을 주고, 그걸 글로 써보게 하면 되겠네. 요즘 면접 질문도 많이 재

밌게 변하고 있는데, 실제 도움도 되지 않겠어?"

나는 무릎을 탁 치고 바로 '나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서른 세 가지 질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학기 초, 질문을 선택하여 발표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수행평가를 공지했다.

서른 세 가지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3.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할까? 실제 당첨된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해 보고 자신의 경우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그것이 행복과 어떻게 연결될 지 말해 보라.

4. 여윳돈이 있든 없든 당신은 삼성전자 주식을 살 것인가? 이유는? (삼성전자의 주당 가격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등락폭을 고려하여 위험도와 이익, 나의 기회비용을 따져 볼 것)

9.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며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고 한 여의도 흉기 난동범에 대해 당신이 판사로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형량과 판결문을 쓰겠는가?

13.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신경전을 계속 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또 한국 땅이 아니게 되면 무엇이 손해인지 이야기한다면?(이것은 이익과 손해의 문제인가? 아니면 자존심의 문제인가?)

14.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는 각각 어떤 기념일인지 설명하시오. 이것이 과자회사, 초콜릿 회사의 마케팅으로 생겨난 것이라면 그럼에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왜인지 말하시오.

학생들은 재미있어 했다. 이미 이전 학기에 <이원재의 5분경영학>이라는 책의 한 꼭지씩을 나누어 읽고 발표한 경험이 있어 익숙하게 발표 주제를 골랐다. 발표 내용이 학생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서로의 가치관, 경제관에 대한 질문도 제법 오갔다. 이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은 경제가 우리 삶과 동떨어져 수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달았으며, 뭔가 재밌는 걸 수업 시간에 계속 한다는 느낌이 들어 수업 시간을 기다렸다.

2013년과 2014년엔 '법과 정치' 수업을 했다. 2012년의 <이원재의 5분경영학>만큼 나에게 흥미를 줄 관련 책이 필요했다. 특히 법정은 법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심한 과목이었다. 까딱 하면 골치 아프고 질리는 과목으로 전락하기 십상이었다. 그러던 중 서점에서 찾은 책이 <생활법률 상식사전>이었다. 이 책은 법원 사무관으로 오랜 기간 재직한 김용국님이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일반인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해서 엮은 책이다. 2006년 미국 한 언론이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저자를 선정하여 인터뷰하기도 했다. 헷갈리는 용어를 구분하기 위한 '바람난 남편, 고소할까 고발할까'라는 꼭지부터 판사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라는 꼭지까지 다양한 법률적 상식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이었다. 게다가 교과서의 대단원과 싱크로율이 상당했다. 당장 사서 읽어보고 한 학급 당 3권씩 윤독할 수 있도록 담당 선생님께 주문을 신청했다. 독서발표

대상 도서의 목차가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으므로, 수행평가 안내서에 목차를 집어 넣기까지 했다. 시작하기 직전 뒤늦게 발견한 또 한 권의 책은 청년유니온 대표 김민수님이 쓴 <청춘이 사는 법>이었다. 이 책은 알바로 전전하는 가난한 청춘들의 현실과 부딪치는 법 이야기를 담았다. 앞의 책 보다 분량은 적었지만, 공감하기에는 충분했다. 과감하게 두 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표하게 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전한 독서 발표에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수업 내용을 친구들이 설명해 주는 꼴이 되니 재미있기도 하고, 친구들이 직접 평가지를 작성하니 자존심 경쟁이 붙기도 했다. 발표문 형식에 일정한 개인사를 삽입하게 하니 서로를 알아가는 의미도 있었다.

수업의 효과도 쏠쏠했다. 당장 방학 때 알바하다 떼어 먹힌 수당을 받아냈다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학생도 있었고, 법적 분쟁에 휘말린 고모에게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해서 고모에게 선생님께 상담을 의뢰해도 되냐고 묻는 학생도 있었다. 물론 내가 해결사는 아니지만, 수업 내용을 자기 현실에 적용시켜 해결하려고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 학생들의 반응을 인용해 본다.

"저는 작년 법정 수업 시간을 통해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수행평가였기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각자 맡은 파트별이 있었고, 그 부분을 못 읽은 친구들을 위해 앞에 나와서 설명해주고, 발표했던 점이 저에게 책임감을 만들어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그때 시험부분에 해당하는 파트를 읽게 되어 시험에도 이익을 보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책을 파트별로 읽어서 타인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방식이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반년을 그렇게 수업하고 난 후인 지금은 재밌었고, 어쩌면 주입식 교육으로 힘들고, 수행평가로도 지쳤던 저에게는 쉽기도 했던 과제이면서, 특별했던 과제였기에 또 한 번 이런 수업방식으로 수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일상고 1학년 황○미)

"이 책에는 내가 몰랐었던 법들도 많이 있어서 새로웠다. 34명 모두 다른 주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34가지의 새로운 법들을 알 수 있었고,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에 대한 느낀 점을 썼기 때문에 아직도 이 책의 내용이 많이 기억난다. 나를 비롯한 요즘 청소년들은 책을 잘 안 읽고, 법에 대한 책은 더욱 관심이 없다. 나는 독서 발표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법을 재미있게 알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다. 내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겨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는 주위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고, 내가 이 책에 나온 사건을 겪게 된다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다.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이 거의 없었는데, 독서발표를 통해서 내 의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한 번 기억하고,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글을 쓰면서 두 번 기억하고, 내가 쓴 글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세 번 기억하고, 친구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네 번 기억하고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독서평가서를 통해서 완전히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좋았다.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하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나중에 법과정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내가 몰랐던 다양한 실생활에 필요한 법을 알고, 발표를 통해 자신감을 키워주는 활동인 독서활동 생각이 날 것 같다." (삼일상고 1학년 박○슬)

"법과 정치는 일주일 5번의 수업이었고 수업시간에는 시사발표, 독서발표, 모의재판 등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활동이었던 독서발표는 하루에 한 명씩 <청춘이 사는 법>과 <생활법률 상식사전>에서 하나의 주제를 골라 사건을 소개하고 쓰여진 법에 대해 설명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읽은 부분은 하나의 주제에 불과하지만 34명이 발표함으로써 책 2권을 읽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발표하려고 준비하면서 읽은 책은 어렵게 느껴졌지만 친구의 발표를 듣는 책은 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친구가 고르는 사건을 보며 그 친구의 가치관이나 관심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으로 되어있어 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 책에 나오는 사건을 겪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서발표를 준비할 때는 책의 내용이 어려워 조금 고생했는데 배의 효과를 얻어오니 성공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의 반응도 좋았고 모두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만약 제가 선생님이 된다면 한번쯤은 해보고 싶은 수업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삼일상고 김○리)

2013년에는 일명 낙지 살인 사건을 소재로, 그리고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에서의 언론 보도 행태를 소재로 교실에서 난상토론을 벌였다. 결혼 사기에 관한 일본드라마 '히어로'를 시청하고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이 되어 모의 재판을 하기도 했다. 또 해마다 폭증하고 있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모서리 토론을 통해 생각의 근거를 다듬는 연습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내가 유식해지는 느낌이 든다.' 식으로 반응했다.

수업을 순식간에 재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모형은 없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관계, 친근한 소재로 출발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건드려 보는 독서 발표, 그리고 그에 이어 자연스레 이어지는 주제 토론은 핵심 요소만 적절히 버무린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수업은 학생의 발표를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친구들의 질문과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손쉬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이제 교사와 학생 모두 '시민'이 되자

이쯤 되니 <더불어 사는 민주 시민>(이하 <민주시민>) 교과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고등학교 <민주시민> 교과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창의 지성 교육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창의 지성 교육이란 창의성과 지적 능력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연관된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 실제로 다양한 학문적 기초를 잘 쌓은 사람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대단히 창의적이다. 그러니 당장에 많은 지식을 쌓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진행되는 방식의 교육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목표로 하긴 하는데, 결정적 한계는 쉽게 말하면 '닥치고 외우는' 것이다. 해당 지식이 가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습득하는 지식은 그저 외우는 것일뿐 나의 지식으로 체화되지 않는다. 창의 지성 교육은 지식을 자신이 납득하는 것일 때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시민됨의 과정이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정치에서 지배 구조를 유형화할 때 높은 수준의 지배 형태를 '조작'이라고 한다. 이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배를 당하는 것인지 모르도록 강압적 형태를 없애고 최대한 피지배자의 능동적 행위를 부각시켜서 얻는 고난도의 지배 형태이다.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소비를 하며 그 행위가 자기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시민적 자각이 이루어진 사회는 그런 조작에 대해 경계할 것을 서로 권한다.

버스 광고 관련 행정자치부의 법령은 버스 광고의 크기가 차창을 제외한 측면적의 1/2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 이런 제한을 두는 걸까? 바로 공익을 위해서[4]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도로 교통의 안전성과 도시 미관의 중대함을 광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법 조항들은 공익과 자유의 경계에서 항상 고민하고 긴장한다. 모든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는 가치관의 충돌, 이것이 법이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민주시민> 교과서는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건드리고자 했다. 단원 영역이 인권, 다양성, 연대, 환경 등등 도덕적인 냄새를 풍기긴 하지만 청소년 인권을 보호할 것이냐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반장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느냐의 문제, GMO 수입과 식량 부족 문제 등 현실 사회의 골칫 거리를 그대로 담았다. 이 주제가 교실로 들어오면 학생들은 다양하게 반응하고 의견을 표할 것이며, 교사는 적절한 진행만으로 학생들의 자기 생각 만들기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를 인쇄된 그대로 수동적으로 가르치는 기존의 방식에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칠 것을 권하는 시기이다. 우리 사회에는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학생들은 그런 시사적인 문제를 고3때의 논술 문제나 입사 면접 준비 때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험 준비도 마찬가지다. 교육과정 재구성 운운하는 이유도 교육의 반성과 지금의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다. 시민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은 교사이지만, 학생들과 함께 <민주시민>의 논쟁 주제를 학생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좀 더 관용적이고 열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전국학교시민교육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민주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서울, 광주, 부산, 전남, 전북, 인천교육청 등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은 청소년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회화의 요소이다. 이로써 사회 공동체는 공동으로 추구할 가치에 대한 탐색과 합의를 통해 더불어 산다는 현실의 실질적인 문제를 토론을 통해 더디더라도 끈질기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 당연한 과정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잊지 않아야 할 부분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4년 송년 미사 멘트로 결어를 대신한다.

"… 크리스천은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약한 자들이 이용당하지 않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광고의 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한 광고행위의 양을 도로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764, 2002.12.18])

<첨부 : 2013년 삼일상고 1학년 법과정치 과목 : 학생의 독서발표문 사례>

2013학년도 삼일상고 1학년 <법과정치> 수행평가

독 서 발 표

▢ 날짜 : 2013/11/12 ▢ 학번 : 10533 ▢ 이름 : 홍소미

1. 자기 소개 :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독서 발표자 홍소미입니다. 저는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해 요즘 무슨 직업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직업이 어울리는지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만 하고 아직도 정하지 못하였지만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열심히 찾아보고 그 직업을 미래에 내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법은 이래서 중요하더라 :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도 성폭행이니 살인이니 각종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만약 법이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에는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해 지고, 규칙도 질서도 모두 무너질 것 입니다.또 하나는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 같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국민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당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어디를 읽었냐면 :

저는 <생활법률 상식사전>의 'PART 5 : 죄 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 부분의 '01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 다친다 - 고소인이 알아야할 몇 가지 진실'을 읽었습니다.

4. 사건 소개 :

그럼 오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질씨는 평소 아내 배신자씨와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이날도 밤 11시가 넘도록 부부는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배씨가 싸움을 끝내기 위해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한씨의 분노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배씨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사용했던 것이다. 배씨도 당하고 있지 많은 않았다. 바로 친청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연락을 받은 배씨의 부모와 오빠 배신남씨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 여동생의 처지를 보고 화가 난 배씨는 한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앙갚음을 했고, 다른 식구들도 가세한 상황이 되었다. 급기야 한씨와 배씨 쪽은 서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서에 낸 이들의 고소장이 이들의 인생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때로는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수차례 받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검찰이 한씨와 배씨 남매 세사람을 기소하면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다시 피고인석과 증인석을 번갈아 가며 법정에 섰다. 7차례 재

판 끝에 폭행사실이 인정된 한성질씨와 배신남씨는 벌금형을, 배신자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부간의 다툼이 이렇게 까지 번진 것이 바람직할까? 만일 양쪽 다 고소하지 않고 마무리 지었더라면 아니 고소했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에 타협점을 찾았더라면 어땠을까? 참고로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도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보다 더 무서운 상해죄라고 해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 하였다면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때의 기분에 따라, 아니면 홧김에 고소장을 내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왕 고소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몇 가지 알아야 한다. 첫째, 형사사건의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검찰-법원의 단계를 거친다. 경찰-검찰은 수사단계이고, 법원은 재판단계라고 이해하면 된다. 둘째, 고소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고소인이 모르는 내용은 판사나 검사도 모른다. 그러기에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모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재판에서 증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셋째, 고소한 사람도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 고소인도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때로는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불려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고소를 하겠다면 이런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만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고소하는 대신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거나 아예 그냥 넘어가는 편이 낫다.

5. 새롭게 알게 된 건 :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 : 수사의 단서를 제시하고 범죄의 처벌을 촉구하는 의미
2) 대질신문 : 소송법상 증인과 증인, 당사자와 당사자, 또는 증인과 당사자 등을 대면시켜서 질문 · 응답하게 하는 일
3) 신문조서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6. 이것만은 알자 :

오늘 제 발표의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고소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고소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부른다고 해서 결코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사건을 가장 잘 아는 피해자의 수고도 어느 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7. 이건 뭔가요? :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는데 고소는 하고 싶은데 과정이 자신이 없어 고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고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5 : 2013년 삼일상고 1학년 법과정치 : 학생의 발표평가지 작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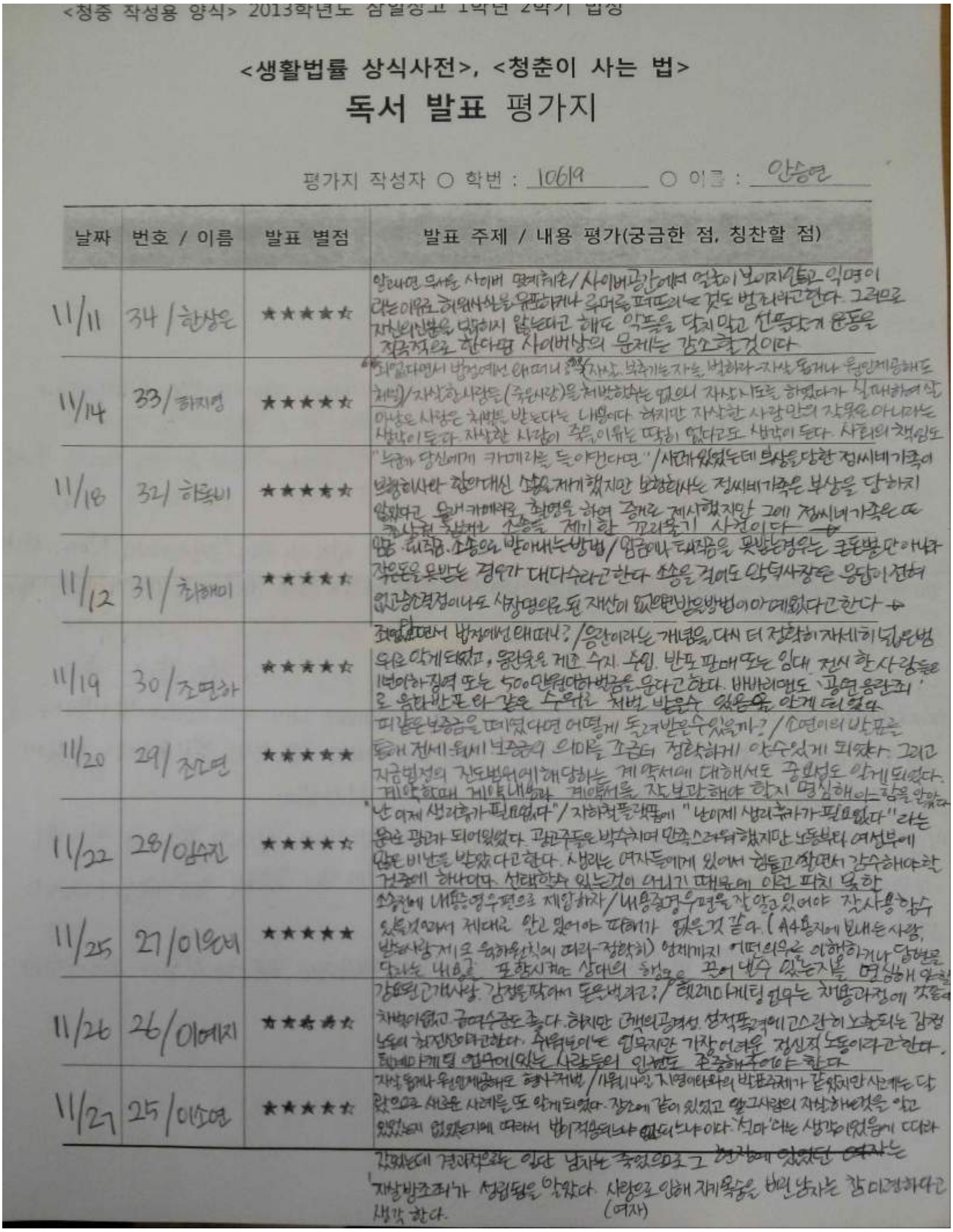

<청중 작성용 양식> 2013학년도 삼일상고 1학년 2학기 법정

<생활법률 상식사전>, <청춘이 사는 법>

독서 발표 평가지

평가지 작성자 ○ 학번 : 10619 ○ 이름 : 안승연

날짜	번호 / 이름	발표 별점	발표 주제 / 내용 평가(궁금한 점, 칭찬할 점)
11/11	34 / 한상은	★★★★☆	알려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공간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익명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루머를 퍼뜨리는 것도 범죄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해도 악플을 달지 말고 선플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사이버상의 문제는 감소할 것이다
11/14	33 / 하지영	★★★★☆	죄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나? (자살, 보조하는 자는 벌하라 -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처벌) / 자살한 사람들(죽은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으니 자살시도를 하였다가 실패하여 살아남은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살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자살한 사람이 죽은 이유는 딱히 없다고도 생각이 든다. 사회의 책임도
11/18	32 / 하득비	★★★★☆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 사고가 있었는데 부상을 당한 정씨네 가족이 보험회사와 합의 대신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험회사는 정씨네 가족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여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에 정씨네 가족은 또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꼬리물기 사건이다
11/12	31 / 최해미	★★★★☆	임금, 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는 큰 돈뿐만 아니라 작은 돈을 못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소송을 걸어도 악덕사장은 응답이 전혀 없고 승소결정이 나도 사장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아예 없다고 한다
11/19	30 / 조연하	★★★★☆	죄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나? / 음란이라는 개념을 다시 더 정확히 자세히 넓은 범위로 알게 되었고, 음란물을 제조, 수지, 수입, 반포, 판매 또는 임대, 전시한 사람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고 한다. 바바리맨도 '공연음란죄'로 음란반포 타 같은 수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11/20	29 / 조소연	★★★★★	피같은 보증금을 떼였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소연이의 발표를 통해 전세·월세 보증금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법정의 진도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도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계약할 때 계약 내용과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명심해야 함을 알았다
11/22	28 / 임수진	★★★★☆	"난 이제 생리휴가가 필요없다" / 지하철 플랫폼에 "난 이제 생리휴가가 필요없다"라는 문구로 광고가 되어있었다. 광고주들은 박수치며 만족스러워 했지만 노동부터 여성부에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생리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참으면서 감수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이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피치 못할
11/25	27 / 이은비	★★★★★	소송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압하자 / 내용증명우편을 잘 알고 있어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피해가 없을 것 같다. (A4용지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제목,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거나 답변을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상대의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명심해야 할
11/26	26 / 이예지	★★★★☆	강요된 친절, 감정을 팔아서 돈을 번다고? / 텔레마케팅 업무는 채용과정에 까다로운 자격이 없고 급여수준도 좋다. 하지만 고객의 공격성, 성적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감정노동의 최전선이라고 한다. 쉬워보이는 업무지만 가장 어려운 정신적 노동이라고 한다. 텔레마케팅 업무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주어야 한다
11/27	25 / 이소연	★★★★☆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 11월 14일 지영이와의 발표주제가 같았지만 사례는 다른 것으로 새로운 사례를 또 알게 되었다. 장소에 같이 있었고 또 그 사람의 자살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이다. '설마'라는 생각이었음에 따라 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남자는 죽었으므로 그 ~~현장에 있었던 여자는~~ (여자)는 '자살방조죄'가 성립됨을 알았다. 사랑으로 인해 자기목숨을 버린 남자는 참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발표 주제 / 내용 평가(궁금한 점, 칭찬할 점)

알고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익명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루머를 퍼뜨리는 것도 범죄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도 악플을 달지 말고 선플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사이버상의 문제는 감소할 것이다.

"죄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 자살 돕거나 원인제공해도 처벌)/ 자살한 사람들(죽은사람)을 처벌할수는 없으니 자살시도를 하였다가 실패하여 살아남은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살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자살한 사람이 죽을 이유는 딱히 없다고도 생각이 든다. 사회의 책임도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사고가 있었는데 부상을 당한 정씨네 가족이 보험회사와 합의대신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험회사는 정씨네 가족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여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에 정씨네 가족은 또 카상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꼬리물기 사건이다 →

임금·퇴직금·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는경우는 큰돈뿐만 아니라 작은돈을 못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소송을 걸어도 악덕사장은 응답이 전혀 없고 승소결정이나도 사장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받을방법이 아예없다고 한다 →

죄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 / 우리나라는 개념을 다시 더 정확히 자세히 넣은 법

<첨부 : 2013년 삼일상고 1학년 법과정치 수업평가서 사례 세 편>

수업 평가 : 한 학기 법정 시간이 내게 준 것

1. 법과 정치에 관한 나의 선입견 (5줄 이상)

안녕 하십니까 저는 12월 21일 수업 평가자 김하늘 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와서 처음 법과정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사회라는 과목이어서 법에 대해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왜 법을 자세히 알아야하고 고등학교과정에 법과정치라는 과목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과정치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알았던 것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또 법과정치를 배우게 되면서 전에는 관심이 가지 않았던 우리나라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이 없이도 내가 양심대로 행동하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게 법과정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법이 정말 필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2. 법정 시간에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7줄 이상)

법정시간은 제에게 항상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법에 대해 알게 되고 시사발표를 통해서 저의 상식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교과서를 벗어나 가끔은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법에 대한 상식도 알게 되었고, 소송의 절차나 형사와 민사의 차이 나이 때에 따른 법의 효력 등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언제 한번 가볼까 말까하는 검찰청에도 가게 되어 검사들이 하는 일, 검찰청에서 하는 일,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들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법정에 간 것처럼 재판을 통해 변호사 검사 판사의 편에 서서 그들이 실제 재판에서 하는 것처럼 실제로 재판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심정을 이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히어로를 보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으로 나도 선의의 편에서는 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가장 의미있었던 활동 & 아쉬웠던 활동 (5줄 이상)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재판이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과 재판을 해보고 서로에 대한 생각을 들으면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서로 들어주면서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나 또한 내가 변호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활동은 마지막재판에서 검사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 아쉬웠던 점입니다. 하지만 처음 재판에서 변호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전에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양보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배심원들이 더 적극적이었던라면 더 재미있는 재판이 아니었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4. 나에게 있어 법과 정치란 (제한 없음. 편향되지 않게 진실하게 작성할 것)

법과정치를 2학기 때 잠시 했던 과목이어서 그럴지 몰라도 많이많이 재미있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며 우

리사회와 조금이나마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1년을 계속 했어도 좋았을 과목이다. 나는 법과정치를 필수적으로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데 법과정치를 통해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배우면서 우리가 법이 필요할 때 배운 내용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끔 선생님의 말씀으로 그날 배운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족이 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법과 정치는 지금 우리 나이 때 그냥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는 과목이 아닌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한국사처럼 법과정치도 필수 과목에 포함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이다.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따라서 나에게 법과 정치란 우리가 사회로 나가기위해 필요한 옵션 이라고 생각한다.

수업 평가 : 한 학기 법정 시간이 내게 준 것

▢ 날짜 : _____2013-12-21_____ ▢ 학번 : ____10612_____ ▢ 이름 : ____박소은_____

1. 법과 정치에 관한 나의 선입견 (5줄 이상)

저는 처음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배운다고 했을 때 기대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사회과목에서 역사보다 우리나라 헌법을 배우는 부분을 좋아했었고 평소에도 법이나 사회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많아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정치 같은 것을 다루는 과목이라서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공부하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 법정 시간에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7줄 이상)

법정은 집중 이수제 과목이라 5일 수업 중에 매일 1시간씩 들어있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선생님께서 '확신의 함정' 이라는 책을 복사하셔서 나눠주시고 다 같이 읽어보고 그 책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법과 관련된 기사를 선택하여 기사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함께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사발표란 것을 했는데 평소에 접할 일 없는 여러 기사를 접하게 되어 좋았고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생활법률 상식사전', '청춘이 사는 법' 이라는 책을 읽고 사건을 소개하고 이야기해보는 독서 발표시간도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명 씩 발표가 끝나면 지식채널 e의 여러 동영상을 봤는데 그냥 말로 했으면 집중하지 못했을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보아 이해하기 쉽고 재밌었습니다. 또, 일본의 법정 드라마인 '히어로' 라는 영상도 보았는데 내용도 재미있고 그 안의 여러 가지 사건도 재미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3.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 아쉬웠던 활동 (5줄 이상)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아무래도 유언장 쓰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해보았고 나의 미래 등에 대한 여러 생각을 갖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활동은 모

의재판 시간 이였는데 결혼사기에 대한 ‘히어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 각자의 역할을 선택하여 재판을 했고 다음엔 징벌적 손해배상-괘씸죄에 관해 예시든 상황을 토대로 해서 모의재판을 했는데 다들 과거에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서 어색해하고 집중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4. 나에게 있어 법과 정치란 (제한 없음. 편향되지 않게 진실하게 작성할 것)

제게 법과 정치란 지루한 수업시간 중 유일하게 집중하고 관심 있게 들었던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여러 영상과 많은 자료를 접해서 좋았고 평소에도 관심 있던 것에 대한 과목이라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과 정치, 사회 과목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ㅠㅠ

수업 평가 : 한 학기 법정 시간이 내게 준 것

▢ 날짜 : ___2013년 12월 21일___ ▢ 학번 : __10508__ ▢ 이름 : ___김지수___

1. 법과 정치에 관한 나의 선입견 (5줄 이상)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업 평가자 김 지수 입니다. 저는 법이나 정치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었고, 항상 이슈가 되는 기사들에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과 정치에 대해 배워도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엔 생각 없이 들었지만 점점 수업을 듣게 될수록 이해하게 되었고, 제게 필요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 알게 되어 얻게 된 것이 많았습니다.

2. 법정 시간에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7줄 이상)

법과 정치 시간은 매일 한 시간씩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지만, 대체적으로 교과서 중심이 아닌 프린트나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수업하여 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법과 관련된 일본 드라마인 ‘히어로‘ 라는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 드라마 속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와 그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EBS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그중에는 법이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들도 있었지만 기본 상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의 사례를 두고 반 친구들 끼리 재판을 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3. 가장 의미있었던 활동 & 아쉬웠던 활동 (5줄 이상)

저는 수업에서 했던 여러 활동 중에서도 가정폭력으로 오랜 시간 힘들어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검사, 판사, 변호사, 배심원으로 나뉘어 재판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반 친구들 끼리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실제 재판처럼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발표를 하는 수행평가를 시간이 부족하여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4. 나에게 있어 법과 정치란 (제한 없음. 편향되지 않게 진실하게 작성할 것)

하루 1시간 꼭 들어있는 5단위 과목이여서 중요하다는 생각 보다는 실제 사회생활 하는 데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어 중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정치 과목을 통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법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양한 영상물을 통해 기본 상식도 많이 알아가게 된 1년 동안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게 공부한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법과 정치를 배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지만 내년엔 배우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더 많은 내용을 배우고 싶게 만드는 과목이고, 법과 정치에 관한 선입견을 버리게 되어 기쁩니다. 무작정 외우거나 계산하는 다른 과목들과 달리, 법과 정치는 기본적인 상식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수업 평가 : 한 학기 법정 시간이 내게 준 것

▢ 날짜 : 2013년 12월 21일 ▢ 학번 :10404 ▢ 이름 : 김선미

1. 법과 정치에 관한 나의 선입견 (5줄 이상)

안녕하십니까 4반 4번 김선미 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는 정치인들의 비리사건이나 국민들의 호소에도 귀를 닫고 계속 그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법, 누가 봐도 마땅치 않은 판사의 판결 등을 보며 법은 사회적 강자들의 횡포를 감춰주는 나쁜 도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은 지금과는 다르게 싹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법의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어른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학기 동안 법과정치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수업시간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 조차 법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모르게 누리고 있는 법의 효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쳐져야 할 부분들은 있지만 법 조차 사람들이 만들었기에 완벽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장점만 있는 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법정 시간에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7줄 이상)

법과정치 시간에는 수업만 하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평소에는 체험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해서 좋았습니다. 시사발표를 하며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친구들이 관심 있는 주제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몰랐었던 신기한 사실들 지식채널과 같은 동영상을 보며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기에 더 값진 것 같습니다. 또한 법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건들도 봤습니다. 직접 판사나 변호사, 검사, 배심원의 역할을 해서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고, 직접 알바생이나 고용주가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며 나중에 알바를 할 때 피해를 입지 않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3. 가장 의미있었던 활동 & 아쉬웠던 활동 (5줄 이상)

저는 수업시간에 했던 활동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시사발표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흔치 않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해보지 않았기에 시사발표를 하며 많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은 얼마 남지 않은 취업 면접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도 키웠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평가를 하는 활동도 의미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활동은 딱히 없었고 다 나중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활동들이어서 1학기동안 법정시간은 저에게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4. 나에게 있어 법과 정치란 (제한 없음. 편향되지 않게 진실하게 작성할 것)

나에게 있어 법과 정치란 나를 보호해주고 나라를 보호해주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